



## Imprint

Publisher: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Wiedner Hauptstrasse 63, POB 319, 1045 Vienna, Austria

Layout: WKO Inhouse GmbH | Media  
Wiedner Hauptstrasse 120-124, 1050 Vienna, Austria

Translator: Innhwa Kwon

The German a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Vienna Rules are the only official texts which were adopted by the Enlarged Presiding Committe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The Korean version at hand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erman version.

## 중재규칙

비엔나규칙 | 2013 년 7 월 1 일 시행



## 조정규칙 (별표 5)

비엔나조정규칙 | 2016 년 1 월 1 일 시행



# 목차

## 비엔나규칙 및 비엔나조정규칙

### 총칙

제1조	비엔나국제중재센터 .....	5
제2조	위원회 .....	5
제3조	국제자문위원회 .....	6
제4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	6
제5조	언어 .....	7
제6조	정의 .....	7

### 중재의 개시

제7조	중재신청 .....	8
제8조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	9
제9조	반대신청 .....	9
제10조	등록수수료 .....	10
제11조	중재기록의 송부 .....	10
제12조	기한, 송달 및 서면제출 .....	11
제13조	대리 .....	12

### 제 3 자의 참가 및 병합

제14조	제 3 자의 참가 .....	12
제15조	청구의 병합 .....	13

### 중재판정부

제16조	중재인 .....	13
제17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	14
제18조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	15
제19조	중재인 지명의 확인 .....	15

제20조	중재인 기피.....	16
제21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16
제22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17

### 전문가 기피

제23조	전문가 기피.....	18
------	-------------	----

###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제24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8
------	-----------------	----

### 중재 절차

제25조	중재지.....	18
제26조	절차의 언어.....	19
제27조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19
제28조	중재의 진행.....	19
제29조	사실관계의 확인.....	20
제30조	구술심리.....	20
제31조	이의권.....	20
제32조	심리의 종결.....	20
제33조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21
제34조	절차의 종료 사유.....	21
제35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22
제36조	중재판정.....	22
제37조	비용에 대한 결정.....	23
제38조	화해.....	23
제39조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23
제40조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24
제41조	중재판정문의 발간.....	24

## 비용

제42조	예납.....	25
제43조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26
제44조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26

## 기타 규정

제45조	신속 절차.....	28
제46조	면책.....	29
제47조	경과규정.....	29

별표 1 표준중재조항 .....	32
별표 2 위원회의 내규 .....	33
별표 3 요금표 .....	34
별표 4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	35
<b>별표 5 조정규칙</b>	
제48조 총칙 .....	36
제49조 정의 .....	36
제50조 절차의 개시 .....	36
제51조 등록수수료 .....	37
제52조 조정장소 .....	38
제53조 절차의 언어 .....	38
제54조 조정인 선정 .....	38
제55조 예납과 비용 .....	39
제56조 절차의 진행 .....	40
제57조 절차의 병행 .....	41
제58조 절차의 종료 .....	41
제59조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당사자대리의 제한 .....	42
제60조 면책 .....	43
제61조 경과규정 .....	43



# 총칙

## 비엔나국제중재센터

### 제1조

(1)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 산하의 비엔나 소재 국제중재센터(“비엔나국제중재센터” 또는 “중재센터”)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규칙”)에 준거하여 중재사무를 수행한다. 단,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 또는 상거소가 당사자들의 합의 시에 오스트리아 외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당사자들의 영업소 또는 상거소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제적 성격을 띤 분쟁의 해결을 위해 비엔나 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합의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비엔나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합의하는 경우, 중재 개시 당시 시행 중인 비엔나규칙이 적용된다.

(3) 오스트리아에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시 비엔나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로서 분쟁의 성격이 국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엔나경제회의소의 상설중재재판소 또는 오스트리아 내 제 3 의 중재지로 합의하였을 시에는 합의된 중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경제회의소가 중재의 관할권을 갖는다. 후자는 지역경제회의소의 상설중재재판소 중재규칙에 준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 위원회

### 제2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위원회는 최소 다섯명의 위원로 구성된다. 위원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 회장의 추천으로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5 년의 임기로 선정된다.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임기만료 시점에 차기 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차기 위원이 선정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 회장의 추천에 따라 현위원회 잔여임기를 위해 위원회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임기동안 일할 회장 1 인과 부회장 2 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유고 시 위원회의 내규(별표 2)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 명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위원은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위원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원은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며 어떠한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별표 2).

## 국제자문위원회

### 제 3 조

국제자문위원회는 임기 중의 위원회에 의해 초빙된 국제중재전문가로 구성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자문 역할로 위원회를 지원한다.

## 사무국장 및 사무국

### 제 4 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정된다.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임기만료 시점에 차기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기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행정 사무를 관리한다. 부사무국장이 선정된 경우, 부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이 위임한 경우, 사무국장의 권한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사무국의 구성원은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위원의 위원은 해당 직의

수행기간 동안 중지된다.

## 언어

### 제5조

당사자와 위원회 및 사무국과의 서면 교신은 독일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의

### 제6조

#### (1) 비엔나규칙에서

- 1.1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란 중재신청서 상의 1 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재에 참가한 1 인 또는 복수의 제 3 자를 말한다.
- 1.2 “신청인”이란 1 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을 말한다.
- 1.3 “피신청인”이란 1 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을 말한다.
- 1.4 “제 3 자”란 진행 중인 중재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아닌 자로서 해당 중재에 참가 신청을 한 1 인 또는 복수의 제 3 자를 말한다.
- 1.5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3 인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 1.6 “중재인”은 1 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말한다.
- 1.7 “배석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을 제외한 중재인단 모두를 말한다.
- 1.8 “판정”은 종국, 일부 또는 잠정 판정 모두를 말한다.
- 1.9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의 위임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부사무국장도 포함한다.

#### (2) 이 규칙에서 지칭하는 자연인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 중재의 개시

## 중재신청

### 제 7 조

- (1) 중재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로써 절차는 진행중이 된다.
- (2) 중재신청서(첨부포함)는 모든당사자, 모든중재인 및 사무국에 각 1 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부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 (3) 중재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1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 3.2 사실관계 및 구체적 청구취지
  - 3.3 청구취지가 특정 총액에 국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신청서 제출 당시의 각 개별 청구의 금전적 가치
  - 3.4 제 17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 3.5 3 인 중재인단에 합의하였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또는 위원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의 요청
  - 3.6 중재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사항
- (4) 중재신청서가 동조 제 3 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되는 부수에 미달되거나 첨부가 빠진 경우, 사무국장은 신청인에게 그 미비점을 보충하거나 중재신청서를 보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사무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보충 또는 보정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제 34 조 제 4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동조 제 4 항에 따른 보충명령이 내려진 바 없거나, 그러한 명령을 신청인이 준수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중재합의가 비엔나규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 제 8 조

- (1)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의 송부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30 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 모든 중재인 및 사무국에 1 부씩 제공되기에 충분한 부수의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2) 답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1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 2.2 중재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및 피신청인의 구체적 청구취지
  - 2.3 제 17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 2.4 3 인 중재인단에 합의하였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또는 위원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의 요청

## 반대신청

### 제 9 조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반대신청으로서 동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다.
- (2) 반대신청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중재판정부에는 비용의 예납이 이루어진 후에 송부된다. 제 7 조는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
- (3)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 반대신청을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의 절차로 진행토록 할 수 있다.
  - 3.1 당사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 3.2 답변서 이후 제출된 반대신청이 본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 (4) 중재판정부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 8 조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에도 적용된다.

## 등록수수료

### 제 10 조

- (1)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반대신청)를 제출할 때에 별표 3 에 명기된 제경비를 제외한 등록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 3 자 참가의 경우(제 14 조) 해당 요청을 하는 당사자 측이 등록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중재의 당사자 수가 초과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는 최대 50 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 (3) 등록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등록수수료는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4) 중재신청서와 제 3 자의 참가신청서는 등록수수료의 완납이 이루어져야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사무국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등록수수료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기한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제 34 조 제 4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재기록의 송부

### 제 11 조

사무국장은 다음의 각 사항들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사건서류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사무국장의 제 7 조의 요건에 따른 중재신청(반대신청) 접수
- (2)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전원 선정
- (3) 제 42 조에 따른 비용의 전액 예납

## 기한, 송달 및 서면제출

### 제 12 조

(1) 서면이 동조 2 항에 규정된 방식에 의거 기한만료일에 송부된 경우 그 서면제출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2) 송달은 수신인의 송달주소로서 서면으로 최종으로 알려진 주소로 한다. 송달은 등기우편, 배달증명, 택배, 팩시밀리, 이메일 또는 송신의 확인이 보장되는 다른 전자적 통신에 의해 보내진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송달은 다음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1 수신자가 송달되어야 할 서면을 실제로 송달받은 일자, 또는

3.2 동조 제 2 항에 의거 보내진 경우, 수령 예정 일자

(4) 당사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다면 서면에 의해 최종으로 알려진 대리인 주소로의 송달은 당사자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본다.

(5) 모든 서면과 첨부는 모든 중재인, 모든 당사자 및 사무국이 각 1 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부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사건서류가 중재판정부에 송부된 이후에는 모든 서면과 첨부는 동조 제 2 항의 방식 또는 중재판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직접 전송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로부터 당사자에게로의 모든 서면통지와 교신의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6) 기한을 통지하는 관련 서면이 도달한 익일로부터 기한은 기산된다. 도달될 일자가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된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기간의 중간에 있더라도 기한의 기산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아니한다. 기한의 만기일이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기한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된다.

(7) 다수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서가 모든 피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경우, 중재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피신청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은 별개 절차로 다루어져야 한다.

## 대리

### 제 13 조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임한 수권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자문받을 수 있다. 사무국장 또는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당사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자의 참가 및 병합

### 제 3 자의 참가

#### 제 14 조

(1) 중재판정부는 제 3 자의 중재참가 및 그 방식을 일방 당사자 또는 제 3 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전원과 참가하려는 제 3 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제 3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2.2 참가신청의 근거, 그리고

2.3 제 3 자 참가방식

(3) 제 3 자의 참가신청이 중재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

3.1 이는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7 조 이하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를 참가신청된 제 3 자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3 자가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진행 중인 중재의 당사자들에게 참가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3.2 제 3 자는 중재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8 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3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를 제 3 자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 절차로 진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미 이루어진 중재인의 지명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 17 조 이하의 규정들에 따라 새로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청구의 병합

### 제 15 조

(1)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시, 다음의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절차가 병합될 수 있다.

1.1 당사자들이 병합에 합의하는 경우, 또는

1.2 동일한 중재인(들)이 지명 또는 선정된 경우

또한 청구들의 기초가 되는 모든 중재합의 상의 중재지가 동일한 경우.

(2) 위원회는 당사자들과 선정된 중재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요청된 청구의 병합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결정과정에서 중재합의들의 양립성 및 절차의 개별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재판정부

### 중재인

### 제 16 조

(1) 각 당사자는 그의 중재인을 자유로이 지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어떠한 특정 추가적 자격 요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완전한 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중재인이 될 수 있다. 중재인들은 당사자들과 계약관계를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2) 중재인들은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최선의 지식과 양심을 다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여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3) 중재인 선정을 수락하는자는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수행가능성, (iii) 중재인 직의 수락, (iv) 비엔나규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은 그의 공정성, 독립성 또는 수행가능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만한 또는 당사자의 합의와 충돌할 만한 모든 정황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즉시 고지의무는 중재의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들에 의해 중재인으로 지명될 수 있으나, 위원회에 의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되지는 못한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 제 17 조

(1) 당사자들은 중재가 단독 중재인에 회부될지 또는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될지에 관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조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위원회는 중재인의 수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 회부될지 또는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될지에 관해 결정한다. 결정과정에서 위원회는 사건의 복잡도, 분쟁의 규모,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인 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합동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4)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중재인을 아직 지명하지 못한 당사자는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명 중재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5)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게 회부되는 경우, 배석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합동으로 지명하고 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6) 사무국장 또는 위원회가 지명된 중재인을 확인\*함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중재인 지명에 구속력이 발생한다(제 19 조).

---

\* 역자 주) 확인이란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당사자나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을 승인하는 절차로서 명백히 부당한 중재인의 지명이 있는 경우 중재인 지명을 거부할 수 있다(제 19 조).

##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 제 18 조

- (1)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제 17 조에 의거 이루어지며, 다음의 보충규정을 둔다.
- (2) 분쟁이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측은 합동으로 사무국장에게 그들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3)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의 합동 지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4) 동조 제 2 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공동중재인이 지명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해당 당사자/당사자들을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예외적인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이미 이루어진 선정을 취소하고 배석중재인 또는 모든 중재인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 중재인 지명의 확인

### 제 19 조

- (1) 사무국장은 중재인의 지명이 이루어지면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중재인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그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사무국장은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 독립성과 그의 권한을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지명된 중재인을 확인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그 확인을 보고한다.
- (2)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여부를 결정한다.
- (3) 지명된 중재인은 확인받음으로써 선정된 것으로 본다.
- (4) 사무국장 또는 위원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사무국장은 당해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들은 30 일 이내에 새로운 배석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지명을 요청한다. 제 16 조부터 제 18 조가 준용된다. 사무국장 또는 위원회가 새로이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할 경우 지명권은 실효되고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중재인 기피

### 제 20 조

- (1)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피될 수 있다. 당사자는 그가 지명하였거나 지명에 참여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그 지명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한해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사유를 명시하고 기피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과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 3 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의견은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4)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기피신청이 계류중일 때에도 중재를 속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할 때까지는 중재판정을 내리지 못한다.

##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 제 21 조

- (1) 중재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경우 조기종료한다.
  - 1.1 당사자간의 그러한 합의
  - 1.2 중재인의 사임
  - 1.3 중재인의 사망
  - 1.4 중재인에 대한 기피결정
  - 1.5 위원회의 중재인 해임

(2) 일방 당사자는 중재인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재인의 해임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무국에 해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무능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원회에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없이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들과 해당 중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해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 제 22 조

(1) 중재인의 권한이 조기종료하는 경우(제 21 조), 중재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대체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선정절차에 따른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1.1 단독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 또는

1.2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의 경우 배석중재인들, 또는

1.3 당사자 일방이 지명하는 경우 중재인 지명당사자,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 선정을 대신하게 한 경우의 당사자에게

30 일 이내에 대체중재인을 지명하고(동조 제 1.1 항과 1.2 항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도록 요청한다. 제 16 조부터 제 18 조는 준용된다.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대체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인정된 경우(제 21 조 제 1.4 항) 대체중재인 지명권은 실효되고 위원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2) 중재인의 권한이 제 21 조에 따라 조기종료하는 경우, 새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한 후 중재의 앞선 절차들의 반복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반복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가 기피

## 전문가 기피

### 제 23 조

제 20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의 기피에 준용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기피에 대하여 결정한다.

#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제 24 조

(1)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였거나 제 18 조에 따라 중재인 지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권한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의는 중재 과정에서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늦게 제기된 이의는 배척되어야 하나, 중재판정부가 그 지체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본안판단과 함께 또는 별개로 가능하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 결정하여야다.

# 중재 절차

## 중재지

### 제 25 조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합의하였던 바 없다면 다음에 따른다.

(1) 중재지는 비엔나이다.

(2)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장소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평결할 수 있다.

## 절차의 언어

### 제 26 조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사건서류의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정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들)을 결정한다.

##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 제 27 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규에 따라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정한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지정은 국제사법조항을 제외한 당해 국가의 실체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를 적용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또는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 중재의 진행

### 제 28 조

(1) 중재판정부는 비엔나규칙과 당사자들의 합의의 범위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사전 공지를 하여 특히 주장 및 증거의 제출과 증거채택요청이 절차의 특정시점까지만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사실관계의 확인

### 제 29 조

- (1)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직권으로 증거 수집, 당사자 또는 증인 신문, 당사자에 대한 증거제출 요청, 또는 전문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증거조사 중 특히 전문가 선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가 적용된다.
- (2)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중재절차는 진행된다.

## 구술심리

### 제 30 조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진행이 구두로 이루어질지 또는 서면에 의할지를 결정한다. 당사자간에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기로하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의 단계에서 그러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청과 변론 및 증거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진다.
- (2) 구술심리의 일자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이 정한다. 심문은 비공개이다.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심문내용의 요약과 그 결과를 담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이의권

### 제 31 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비엔나규칙 또는 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법규 규정을 위반한 점을 알고 있다면 중재판정부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그의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심리의 종결

### 제 32 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중재판정문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심리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하고, 최종판정문의 선고예정일을 사무국장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 제 33 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건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제 11 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과 그러한 처분에 대한 수정, 중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국내법원에서 집행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동조에 따른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지시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2 인 이상인 중재에서는 의장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만약 의장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는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한 기재함을 조건으로, 해당 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지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지시에는 처분일자과 중재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지시는 중재판정문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 36 조 제 5 항).

(5)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관할국가기관에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가기관에 그러한 처분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에 대한 위반 또는 권리포기로 여겨지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를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절차의 종료 사유

### 제 34 조

절차는 다음의 각 경우에 종료된다.

(1) 판정

(2) 합의의 확정 (제 38 조)

(3) 다음 경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명령

3.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에 합의하고 이를 중재판정부에 알리는 경우.

3.3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 가능성을 최고한 중재판정부의 서면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4) 보정명령(제 7 조 제 4 항) 또는 납입명령(제 42 조 제 3 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무국장의 선언

##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 제 35 조

(1) 중재판정부에 의한 모든 중재판정문과 모든 결정은 중재인 전원의 과반수 의견을 요한다. 중재인들의 과반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2) 배석중재인들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의장중재인은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중재판정

### 제 36 조

(1)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전원이 이유의 불기재에 관하여 서면으로 또는 구술공판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재판정문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명기하여야 한다(제 25 조).

(3) 모든 중재판정문 정본에는 중재인 전원이 서명한다. 일부 중재인이 서명하기를 거절하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해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중재판정이 과반수 결정이나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반대 중재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문의 모든 정보는 사무국장의 서명과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판정임을 확인하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인이 있고, 비엔나규칙에 따라 선정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5)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중재판정문은 송달됨으로써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문 원본 한 부를 보관하고,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관하여야 한다.

(6) 당사자의 요청 시, 단독중재인 내지 의장중재인 (유고시 다른 중재인) 또는 이들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중재판정문이 종국적이며 유효함을 모든 정보에 확인하여야 한다.

(7)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의 조건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 비용에 대한 결정

### 제 37 조

절차가 종료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문 또는 별개의 결정문에 제 44 조 제 1.1 항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된 중재의 비용, 제 44 조 제 1.2 항에 따라 당사자 부담 비용의 적정 총액, 및 제 44 조 제 1.3 항에 따른 기타 추가적 경비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누가 절차의 비용을 부담할지 또는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용의 부담을 결정하여야 한다.

## 화해

### 제 38 조

당사자들은 합의한 화해 내용을 기재하도록 또는 합의한 조건에 대한 화해를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 제 39 조

(1)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한 다음의 신청들을 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

#### 1.1 중재판정문 상의 오산, 오타, 인쇄상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수정

## 1.2 중재판정문의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 1.3 중재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중재판정문에서 누락된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

(2) 중재판정부는 상기 신청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 진술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추가 행정수수료 및 중재판정부의 추가적 경비와 수당을 포괄하는 예납금을 결정하고, 그러한 예납금의 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중재인의 추가수당과 추가 행정수수료는 사무국장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권으로 동조 제 1.1 항의 수정 또는 제 1.3 항의 보충을 할 수 있다.

(4) 제 36 조 제 1 항부터 제 6 항은 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에 적용된다. 정정 및 해석은 추록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는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 제 40 조

국가기관이 절차를 중재판정부에 이송하는 경우, 비엔나규칙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사무국장과 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이송의 필요사항에 따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추가 경비와 수당 및 행정수수료의 예납을 결정할 수 있다.

## 중재판정문의 발간

### 제 41 조

위원회와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정문을 익명으로 요약 또는 발췌하여 법률 학술지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자체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다.

# 비용

## 예납

### 제 42 조

(1)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되는 행정수수료, 중재인 수당 및 경비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사건서류가 중재판정부에 송부되기 전에 납부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예납금을 균분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수당사자 절차에서는 예납금의 절반은 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나머지 절반은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동조에서 언급되는 일방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당사자들은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동조 제 1 항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상호 예납 의무를 부담한다.

(3)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 30 일 이내에 해당 미납금을 납입하도록 요청한다. 미납당사자가 지는 동조 제 2 항에 따른 예납금의 자기부담의무는 이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제 34 조 제 4 항 의거). 이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당사자가 동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비용납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대방 당사자가 동조 제 3 항에 따라 그 부담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당사자의 요청 시 중재판정부는 미납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납부당사자에게 판정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변제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제 37 조에 따라 비용의 최종배분을 결정하는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사무국장이 추가예납을 결정할 시,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가 준용된다. 추가예납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예납비용의 증액 또는 추가를 초래한 청구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한다.

##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 제 43 조

- (1) 중재판정부가 전문가, 번역가 또는 통역사의 선정, 절차상의 속기록, 현장방문, 또는 심리장소의 변경과 같이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의 특정단계를 고려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예상비용이 마련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2) 중재판정부는 예상비용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만 동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상의 단계를 진행한다.
- (3) 중재판정부는 만일 동조에 따른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련의 결과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 (4) 절차상의 단계들과 관련한 동조 제 1 항에 언급된 모든 지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 제 44 조

- (1) 절차비용은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 1.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행정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재인수당, 경비(중재인의 여행 및 체류비, 송달료, 임대료, 속기록 비용 등),
  - 1.2 변호사 대리에 따른 당사자들의 부담 비용,
  - 1.3 중재와 관련된 특히 제 43 조 제 1 항에 나열된 기타 경비
- (2) 사무국장은 분쟁금액에 따라 요금표(별표 3)에 기초한 행정수수료 및 중재인수당을 산출하며 이를 다른 경비(동조 제 1.1 항)와 함께 절차의 종료 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동조 제 1.2 항과 제 1.3 항에 기재된 비용과 기타 경비를 결정하고 이를 중재판정에 명시하여야 한다(제 37 조).
- (3) 분쟁금액을 확정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일부청구만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과소평가되었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의 계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4) 중재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된 경우, 별표 3 에 기재된 행정수수료 및 중재인수당은 최대 50 퍼센트 이내에서 각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 (5) 반대신청 및 제 3 자의 참가신청에 따른 행정수수료 및 중재인 수당은 사무국장이 별도로 산출하고,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 (6) 기존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한 청구를 판단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추가적 업무부담에 대한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이 별도로 계산되고 납부되어야 한다.
- (7) 별표 3 에 기재된 중재인수당은 단독중재인에 해당된다. 중재인단을 위한 총 수당은 단독중재인 수당요율의 2.5 배이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는 사무국장은 중재인수당 (단독중재인 및 중재인단)을 최대 30 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 (8) 별표 3 에 기재된 요금은 관할권판정, 일부판정, 전문가에 대한 기피결정, 보전 또는 임시 처분의 지시와 같은 모든 일부 또는 임시결정, 파기에 따른 절차상의 추가적 단계를 포함한 기타 결정들 및 절차상의 지시를 포함한다.
- (9) 분쟁금액의 감축은 행정수수료 및 중재인수당의 계산이 사건서류가 중재판정부에 송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행정수수료와 중재인수당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 (10) 절차가 조기종료된다면 사무국장은 중재인수당을 중재종료 당시의 절차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다.
- (11) 경비는 실제지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12) 별표 3 에 기재된 요금은 중재인수당에 적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당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중재인들은 그 직을 수락하면서 사무국장에게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알려야 한다.

# 기타 규정

## 신속 절차

### 제 45 조

- (1) 신속절차에 대한 보충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이를 중재합의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그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의 신속절차에 대한 합의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보다 선행하여야 한다.
- (2) 신속절차 규정들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변경내용들과 함께 비엔나규칙의 일반 조항들이 적용된다.
- (3) 제 42 조에 따른 예납의 납부기한은 15 일로 줄어든다.
- (4) 반대신청이나 반소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기한까지만 가능하다.
- (5) 신속절차는 당사자들이 중재인단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 (6) 분쟁이 단독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합동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기한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7)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중재신청서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지명된 배석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그 기한내에 지명되지 못하면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8) 중재판정부는 절차가 조기종료되지 않는 한, 사건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합리적 요청 또는 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 (9) 중재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9.1 중재신청서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 이후에, 당사자들은 1 회에 한하여 추가로 서면을 교환할 수 있다.

9.2 당사자들은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서면증거를 이에 첨부한다.

9.3 당사자들에 의해 요청되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거가 제출되고 법적 쟁점이 다루어지도록 1 회의 구술심리기일을 열어야 한다.

9.4 구술심리 이후에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할 수 없다.

## 면책

### 제 46 조

중재인들,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위원회와 위원,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와 그 임직원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 경과규정

### 제 47 조

본 비엔나규칙은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 별표 1

###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청구(계약의 유효성,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는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 규칙)에 의거 선정된 1 인 또는 3 인의 중재인에 의해 중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능한 보충 합의사항

- (1) 신속절차 규정들을 적용한다.
- (2) 중재인의 수는 .....(1 인 또는 3 인)으로 한다.
- (3) .....의 실체법을 적용한다.\*)
- (4)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이다.

---

\* 유엔국제물품거래협약(1980)의 적용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

## 별표 2

### 위원회의 내규

- (1)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고, 그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의해 주재된다.
- (2) 위원회는 위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정족수를 충족한다. 전화 또는 영상회의와 인터넷을 통한 참가도 출석으로 유효된다.
- (3) 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현 위원들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2인의 부회장 모두 유고시, 회장의 직무는 최장 재직 위원이 수행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최장 재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5)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위원은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위원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회람결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 회장은 서면제안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서면투표의 기한을 정한다. 본 별표 제 2항과 제 3항이 준용된다. 각 위원은 서면제안에 관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7) 위원회는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별표 3 요금표

등록수수료 1,500 유로<sup>1</sup>

행정수수료<sup>2</sup>

분쟁금액 (유로)		요율 (유로)
이상	이하	
0	100,000	1,500
100,001	200,000	3,000 + (신청금액 - 100,000) x 1.875 %
200,001	500,000	4,875 + (신청금액 - 200,000) x 1.250 %
500,001	1,000,000	8,625 + (신청금액 - 500,000) x 0.875 %
1,000,001	2,000,000	13,000 + (신청금액 - 1,000,000) x 0.5 %
2,000,001	5,000,000	18,000 + (신청금액 - 2,000,000) x 0.125 %
5,000,001	10,000,000	21,750 + (신청금액 - 5,000,000) x 0.063 %
10,000,000 이상		24,900 + (신청금액 - 10,000,000) x 0.013 % 최대 35,100 유로

단독증재인 수당<sup>3</sup>

분쟁금액 (유로)		요율 (유로)
이상	이하	
0	100,000	신청금액 x 6% - 최소비용 3,000
100,001	200,000	6,000 + (신청금액 - 100,000) x 3.00%
200,001	500,000	9,000 + (신청금액 - 200,000) x 2.50%
500,001	1,000,000	16,500 + (신청금액 - 500,000) x 2.00%
1,000,001	2,000,000	26,500 + (신청금액 - 1,000,000) x 1.00%
2,000,001	5,000,000	36,500 + (신청금액 - 2,000,000) x 0.60%
5,000,001	10,000,000	54,500 + (신청금액 - 5,000,000) x 0.40%
10,000,001	20,000,000	74,500 + (신청금액 - 10,000,000) x 0.20%
20,000,001	100,000,000	94,500 + (신청금액 - 20,000,000) x 0.10%
100,00,000 이상		174,5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01%

<sup>1</sup> 제 10 조 | <sup>2</sup> 제 44 조 제 2 항 | <sup>3</sup> 제 44 조 제 7 항

## 별표 4

###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선정권자로 요청된 경우, 그 요청자는 매 요청마다 2,000 유로의 반환불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해당 요청은 요금의 총액이 완납된 후에 진행된다.

# 별표 5

## 조정규칙

### 총칙

#### 제1조

- (8)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이하 “비엔나조정규칙”)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발생 이전 또는 이후 합의하는 경우, 절차 개시 당시 유효한 비엔나 조정규칙이 적용된다.
- (9) 비엔나조정규칙과 달리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조정인 선정 이후 모든 수정사항은 조정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 (10) 위원회는 합의된 수정사항이 비엔나조정규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의

#### 제2조

##### (11) 비엔나조정규칙에서

- 1.1 “절차”란 조정,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달리 조정인이 재청하고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이들 분쟁해결방식들의 결합을 말한다.
- 1.2 “조정인”이란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제 3자를 말한다.
- 1.3 “당사자”란 비엔나조정규칙에 그들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하거나 합의하였던 1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을 말한다.

##### (12) 비엔나조정규칙에서 지칭하는 자연인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 절차의 개시

#### 제 3 조



(1)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절차는 사무국에 그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절차는 당사자들의 의해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조정신청서(첨부포함)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당사자, 모든 조정인 및 사무국에 각 1 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부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정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1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3.2 사건과 분쟁의 간략한 설명

3.3 분쟁 금액

3.4 지명된 조정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또는 조정인으로 선정될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3.5 비엔나조정규칙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의 상세 사항 또는 제안 사항; 특히

i. 조정인의 수

ii. 절차에 사용될 언어(들)

(4) 사무국장은 조정신청서의 접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신청서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 등록수수료

### 제 4 조

(1)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부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비엔나규칙 별표 3 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한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등록수수료는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본안에 관한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 개시 전, 절차 진행중, 또는 절차 이후에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 두번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사무국장은 필요시 등록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 조정장소

### 제5조

조정인은 선행되거나 병행 중인 절차와 무관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 회의 또는 기일의 장소를 결정한다.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회의 또는 기일을 열 수 있다.

## 절차의 언어

### 제6조

조정인은 사건서류를 송부(제 9 조 제 1 항)받은 후 지체없이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인 선정

### 제 7 조

(5) 조정인 또는 조정인의 선정방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부재 시, 사무국장은 지정한 기한내에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고 조정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6) 사무국은 1 인 혹은 그 이상의 조정인을 추천하여 그 중 1 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을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조정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인의 자격조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제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7) 위원회의 조정인 선정 또는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에 앞서, 조정인은 사무국장에게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수행가능성, (iii) 조정인 취임의 수락, (iv) 비엔나조정규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을 야기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와 모순되는 모든 정황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정인의 이러한

공개의무는 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8) 조정인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위원회가 해당 조정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된 조정인을 확인한다.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명된 조정인은 확인받음으로써 선정된다.

(9) 조정인의 확인이 거부되거나 또는 조정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 1 항부터 제 4 항을 준용한다.

## 예납과 비용

### 제 8 조

(10)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 행정수수료, 조정인 수당에 대한 선금(부가가치세 가산) 및 예상 경비 (조정인의 여행 및 체류비, 송달료, 임대료 등)에 대한 1 차 예납금을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조정인에게 사건서류가 송부 되기에 앞선 사무국장이 정한 기한 내에 1 차 예납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1) 사건서류를 송부받은 이후 조정인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예상소요기간과 비용에 대한 견적을 산정한다. 그에 따라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2 차 예납금 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첫 조정 기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2) 절차가 예상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조정인은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에 상당한 추가 예납금을 정한다.

(13)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가 할당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총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장은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의 미지급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내에 예납 분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사무국장은 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14) 절차의 종료 시, 사무국장은 행정수수료와 조정인수당을 계산하고 경비와 함께 이들 비용을 확정한다.

(15) 행정수수료는 요금표(비엔나규칙 별표 3)에 기초하여 분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행정수수료는 중재절차를 위한 금액의 절반이다. 분쟁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잘못 평가되었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의 산출액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16) 경비는 실제 발생한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17) 조정인의 수당은 시간당 혹은 일당 요율에 기초하여 실제 소비된 시간에 따라 산정된다. 요율은 조정인의 선정 또는 확인 시에 조정인과 당사자들과 협의 후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동시에 사무국장은 비용의 적정성과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 별도의 수당에 관한 협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18) 당사자 간에 달리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법적대리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19)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개시 직전, 진행중 또는 이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본안과 관련한 중재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라 개시되면, 진행 중인 절차의 행정수수료는 이후에 개시된 절차의 행정수수료에서 공제한다.

(20)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종료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본안과 관련한 중재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라 개시되면, 사무국장은 비엔나규칙 제 44 조 제 10 항에 의거하여 중재인수당을 결정한다.

## 절차의 진행

### 제 9 조

(21) 사무국장은 다음의 경우 조정인에게 사건서류를 송부한다.

- 제 3 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고,
- 조정인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1 차 예납금이 전액 납입된 경우.

(22) 조정인은 지체없이 절차진행의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수용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조정인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3) 비엔나 조정규칙에 의한 절차는 대면 혹은 화상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조정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조력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모든 회의 또는 기일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임받고 조정의 합의를 포함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24) 절차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예의바르게 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 1 항 제 1.5 호에 의해 절차가 조기 종료되지 않는 이상,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기일에 최소한 1 회 참석하여야 한다.

(25) 조정인과의 기일은 비공개이다.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조정인,
- 당사자들, 그리고
- 해당 기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정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참석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제 12 조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을 한 제 3 자.

(26)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없이 일방 당사자와 회담을 가질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조정인이 해당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기로 또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정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부재 중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절차의 병행

### 제 10 조

당사자는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동일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재판, 중재, 또는 다른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미 계류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절차의 종료

### 제 11 조

(27)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무국장의 서면 확인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때 종료한다.

27.1 당사자들이 분쟁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경우

27.2 일방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서면을 조정인 또는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이는 조정인과 최소 한번의 조정기일이 열렸거나, 조정인의 선정 이후 2 개월 이내에 한번도 기일이 열리지 않았거나, 또는 절차를 위해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 한다.

**27.3** 조정인이 당사자들 사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27.4** 조정인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 고지한 경우

**27.5** 다음에 관해 사무국장이 서면 고지한 경우

- i. 제 7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의거한 조정인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ii. 정해진 기한 내에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8)** 동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의 종료 사유가 분쟁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절차는 부분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

**(29)** 동조 제 1 항 제 1.2 호에서 제 1.4 호 및 제 2 항의 경우, 조정인은 절차종료의 정황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당사자대리의 제한**

### **제 12 조**

**(30)** 제 9 조 제 5 항에 열거된 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그와 무관하게는 알게 되지 않았을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31)** 해당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그와 무관하게는 취득하지 않았을 모든 문서는 후속 재판, 중재 또는 다른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절차 상의 어떠한 진술, 의견, 제안이나 자백 및 일방 당사자의 분쟁 합의의 의사도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상기 내용들과 관련하여 조정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는다.

**(32)**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의무는 해당 절차의 준거법이 달리 의무조항을 두고 있거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3)**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비밀유지 사항이 아니다.

(34) 조정인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본안을 구성하거나 또는 구성했던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어떤 재판, 중재, 또는 여타 절차에서 변호사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 면책

### 제 13 조

조정인,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위원회와 위원,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와 그 임직원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 경과규정

### 제 14 조

(35) 2016 년 1 월 1 일자로 시행되는 비엔나조정규칙은 2015 년 12 월 31 일 이후에 개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36) 당사자들이 조정규칙의 시행 이전에 분쟁을 화해규칙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비엔나조정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화해규칙이 적용된다.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VIAC)**  
Wiedner Hauptstrasse 63, 1045 Vienna, Austria

T +43 (0)5 90 900 4398

F +43 (0)5 90 900 216

E [office@viac.eu](mailto:office@viac.eu)

[www.viac.eu](http://www.viac.eu)

---

---